

Q. 시험 감독을 수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신고 대상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감사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외부강의 등을 매개로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외부강의 등으로 인한 사례금 수수가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민관 유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공직자등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원인을 사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매뉴얼. P.184]

청탁금지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은?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매뉴얼. P.186]

그러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외부강의 등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매뉴얼. P.187]

즉, 시험 감독이 시험지 배부·취합, 시험시간 중 응시자 감독, 응시자 퇴실지도 등의 업무에 관한 것이고, ①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②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 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유사 문의 사례 1.~3.

국민권익위원회 유사 문의 사례 1.

외부강의에 해당 여부 등				
게시자	서**	게시일	2018-01-19	조회수 767
소방안전협회의 설립근거는 소방기본법 제40조이고, 같은 법 제45조에 의거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소방안전협회에서는 각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강사수당은 1시간당 14만원 정도) 또한 소방안전협회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모든 교육이 끝나고 자체시험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때 소방공무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하고 있어 일부 소방공무원은 연 3 ~4회의 시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시험감독수당 약 5만원 정도) ※ 강사 및 시험감독 업무 수행은 정규근무시간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1] - 소방안전협회에 강사로 출강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어찌보면 협회에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소방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 만일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복무관리를 함에 있어 외출(또는 연가)이 맞는지 아니면 출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3] -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안전협회에서 위탁한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관한 교육업무에 협회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후 실시하는 자체시험평가 감독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 4] - 소방안전협회 시험감독업무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인지? 만일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연3~4회 정도 시험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전글	금품등 수수 금지 해석 문의			
다음글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목록

수정

삭제

청탁금지제도와	2018-01-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정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외부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에서의 강의·강연 등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상당할 것입니다. 단, 시험감독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정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험감독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출장 등 복무관련 사항은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복무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사 문의 사례 2.

시험감독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게시자	**	게시일	2016-11-30	조회수 1,792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자격시험 감독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전글	유관단체간의 MOU 및 공연 공동제작 단체의 직원 공연 초대 가능여부			
다음글	사무실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목록

수정

삭제

청탁금지제도와	2017-03-2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자격시험 감독이 시험지 배부·취합, 시험시간 중 응시자 감독, 응시자 퇴실 지도 등의 업무를 하는 것에 해당할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공공기관별 행동강령에서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행동강령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사 문의 사례 3.

(외부강의등 관련)시험출제,시험감독,정당한권원 판단 여부

게시자

박**

게시일

2016-10-27

조회수

1,39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를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공직자등이 하는 시험출제(감수)와 시험감독의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종역·자문의 경우, 동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의 수수로 규율하여 권원의 정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렇다면 권원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공직자등에 대한 종역·자문 요청기관의 공문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님 당사자 간의 사적거래로 보아 계약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근거자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정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해설집(국민권익위원회 발행) p.144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을 포함)이어야 함.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종역·자문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하며 예외사유인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

이전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다음글

경조사비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목록

수정

삭제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시험 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 고 보기 어렵워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감독 역시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정당한 권원의 경우 계약이나 이에 준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